원화환산납입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

제 3조 [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제 4조 [환산기준일]
제 5조 [원화환산율]
제 6조 [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7조 [특약의 적용]
제 8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5관 기타사항

제1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원화환산납입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

제 3조 [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제2회 이후 보험료 등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 4조 [환산기준일]

①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일"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② 환산기준일은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합니다)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제 5조 [원화환산율]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용어해설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제 6조 [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회사는 이 특약의 약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7조 [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외국통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서 제2회 이후 보험료를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통해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원화환산은 주계약 보험료에 해당하는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제 8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 9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